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부서장, 원무부서장

제 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요양급여비용 지급지연 및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적용 안내

1. 관련 근거 : 질병관리본부 심혈관·희귀질환과-2926 (2015.11.12)

2. 위 근거와 관련, 질병관리본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'15년 말부터 의료비지원액 소요가 예산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이 지연될것으로 예상됨을 알려왔습니다.

3.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 대상자가 동일요양기관 이용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※근거법령

-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9조 2항2 (대통령령 제26367호)
-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
-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운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57 ( 2015.11.17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ldm@kha.or.kr